

#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설명서

- •이 설명서는 「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 (이하 "리볼빙")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(이하 "고객")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  - 고객님께서는 리볼빙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## 1.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.

- 리볼빙 신청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며, 신용카드 신규발급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리볼빙은 대출개념의 결제방식으로 이용 시 **수수료(이자)가 부과**됩니다.
- 결제일에는 **약정하신 비율만큼만 결제**됩니다. **결제비율을 높이려면** 별도 **약정결제비율 변경**을 신청하세요.
- 리볼빙 이용 중에는 **언제든 일시 상환이 가능**하고. **중도상환수수료도 없습니다.**
- 리볼빙 이용 시엔 <u>개인신용평점이 하락</u>할 수 있으며, 약정결제비율을 100% 미만 신청 후 계속 이용하면 갚아야하는 대금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.
- 다른 금융회사 연체 등 약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 수수료율(이자율)이 오르거나, 최소결제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, 이 경우 고객님께 미리 고지 드립니다.
- <u>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결제대금이 부족</u>하더라도 <u>최소결제금액 이상으로 결제되면 나머지 금액은 연체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월</u>됩니다. 결제일 이후 결제계좌에 부족액을 입금하셔도 <u>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, 카드고객상담센터,</u>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별도 출금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<u>리볼빙 약정해지는 카드고객상담센터,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</u>하실 수 있습니다.

## 2. 상품 개요

- ▶ 리볼빙은 당월 일시불거래 청구금액 중 고객이 은행과 약정한 약정(최소)결제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다음 달 결제일에 잔여결제금액과 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.
  - 최소결제비율 미만으로 결제 시 그 차액은 연체로 처리되며, 리볼빙 계약 해지 시에는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대상 거래	■ <u>국내·외 일시불 이용금액</u> (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, 할부 등 일부거래 제외)
약정 기간	■ 이용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<u>유효기간(최장 5년)까지 1년 단위로 고객이 선택</u>
약정결제비율	■ 10 ~ 100% 사이에서 고객이 선택 - 고객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로,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선택가능
최소결제비율	■ 10 ~ 30% 내에서 은행이 정함  - 고객이 결제일에 결제해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  -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등 리스크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적용하며, 이후 신용변동, 은행의 경영상황 또는 국가경제나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현저한 사정 변경 발생 시최소결제비율은 상향 등 변경·적용될 수 있음(분기 또는 반기, 연장 시 등)  -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으로 계산
수수료율	■ <u>6.9 ~ 19.9 % 사이</u> 에서 고객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- 신용변동, 금융환경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(분기별)
결제금액 안내	■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해 안내



## 3. 거래구조사례 비교

## ▶ 리볼빙 약정결제비율별 결제 사례

이용금액 (예시)	적용되는 리볼빙 조건 (예시)
-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 : 일시불 100만원 ※할부 등 리볼빙 미대상 거래는 사용하지 않음	<ul><li>최소결제비율: 10%</li><li>리볼빙 적용 수수료율: 연 16%</li><li>리볼빙 연체 수수료율: 연 19%(적용 수수료율+3%)</li></ul>

## • 전월 이월잔액이 없는 경우 결제일 통장 잔고별 리볼빙 결제 예시

결제일 통장 잔고	약정결제비율 <u>100%</u> 약정	약정결제비율 <u>40%</u> 약정
100만원	100만원 결제, 다음 달 이월 대상액 없음	40만원 출금,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
80만원	80만원 결제, 2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	40만원 출금, 6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
5만원	[통장 잔고가 최소결제비율(10%) 해당 금액(10만원) 미만]  - 최소결제금액 10만원 중 5만원 출금 후, 나머지 5만원은 연체 (연체 중인 5만원에 연 19%의 연체 수수료율을 연체 해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)  -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90만원은 다음 달로 이월 (이월된 90만원에 연 16%의 리볼빙 수수료율을 일할계산하여 다음달 결제대금에 포함하여 청구) ※최소결제금액 계산 : 청구금액(100만원) × 최소결제비율(10%) = 10만원	

## • 전월 이월잔액(일시불 60만원)이 있는 경우 리볼빙 결제금액 계산 예시

구분	약정결제비율 <u>100%</u> 약정	약정결제비율 <u>40%</u> 약정	
	(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+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) × 약정결제비율		
리볼빙 약정청구 원금	(60만원 + 100만원) × 100% = 160만원 ※다음 달 이월금액 없음	(60만원 + 100만원) × 40% = 64만원 ※160만원 중 64만원을 차감한 96만원은 다음달로 자동이월	
리볼빙 수수료	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× 수수료율 × 이용경과일수 / 365 (윤년은 366)		
니르6 구구표	60만원 × 16% × 30/365 = 7,890원 (이용경과일수는 30일인 것으로 가정)		
리볼빙	리볼빙 약정청구 원금 + 리볼빙 수수료		
약정결제금액	160만원 + 7,890원 = <b>1,607,890원</b>	64만원 + 7,890원 = <b>647,890원</b>	
리볼빙	(전월 리볼빙 이월잔액 + 당월 리볼빙 신규이용금액) × 최소결제비율 + 수수료		
최소결제금액	최소결제금액 (60만원 + 100만원) × 10% + 7,890원 = <b>167,890원</b>		
결제해야할 금액	■ 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☞ 약정결제금액(1,607,890원)	■ 이번 달 결제해야할 금액 ☞ 약정결제금액(647,890원)	
	■ 최소결제금액(167,890원)만 결제 시 ☞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(144만원)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	■ 최소결제금액(167,890원)만 결제 시 ☞ 연체처리 없이 잔여금액(144만원)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리볼빙 수수료 부과	



## 4. 리볼빙과 유사상품 비교

#### ▶ 유사 서비스 및 카드대출과 구별되는 특징

구분	리볼빙	분할납부	장기카드대출(카드론)
대상	당월 결제금액 중 리볼빙 이용 가능금액 전체	결제(일시불) 건별 지정	_
매월 납부금액	약정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내에서 최소결제비율 적용 금액 이상 납부	분할금액(정액)	만기일시상환, 분할상환 등
수수료율	분기별(3개월) 변동	고정	고정
납부 기간	잔액 완제 시 까지	고정	고정

#### ▶ 유사 서비스 및 카드 대출 간 2021년 중 평균 수수료율 비교

일시불 거래의 납부 이연서비스		카드대출(대출정	정보등록 · 공유)
리볼빙	분할납부(유이자)	<b>단기카드대출</b> (현금서비스)	<b>장기카드대출</b> (카드론)
15.82%	15.98%	17.84%	13.08%

-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: 대출금을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에 일시상환하는 단기대출(DSR 산정 시 포함)
-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: 대출금을 매월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하는 장기대출(DSR 산정 시 포함)

## 5. 기한 연장 및 계약해지

기한연장	기한 연장이 가능한 고객의 경우 약정기간 <b>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개별통보</b> 하며, 약정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.
계약해지	고객의 계약해지 요청, 탈회, 기한이익의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리볼빙 계약이 해지되며, 고객에게 <u>이용금액 전액을 청구</u> 할 수 있습니다.

## 6. 연체수수료율 및 기한이익상실

연체 수수료율	리볼빙 수수료율 + 3%(p), 법정최고금리(연 20%) 이내 -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시 미결제금액에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체수수료 부과
기한이익의 상실	연속 2회차 이상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등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발생 시 <u>리볼빙 청구액 전액</u> 이 일시청구 됩니다.

## 7. 이월잔액 중도 납부 및 연체금액 납부

결제일에 <u>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 시 연체처리</u> 되며, 연체금액에 대해 <u>연체수수료를 지급</u>해야 하며 최소결제금액을 제외한 **잔여결제대금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**됩니다.

<u>이월잔액은 계좌에서 추가 출금되지 않으므로</u>, 중도납부 희망 시 <u>카드고객상담센터,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별도</u> 출금 요청을 해주셔야 하며,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카드고객상담센터: 1644-4000 〉 상담사에게 출금을 요청 • 홈페이지(모바일앱): 농협카드 홈페이지(모바일앱) 〉 결제 〉 선결제

## 8. 리볼빙 이용 시 불이익

리볼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<u>개인신용평점</u>이 하락할 수 있으며,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 경우 수수료 인상 등 <u>금융거래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</u>할 수 있습니다.



## 9. 금리인하요구권

■ 대상 □ 비대상

- 은행과 리볼빙 약정을 체결한 고객은 『여전법』제50조의13(금리인하요구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(신용상태가 개선)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: 취업, 승진 등 소득증가, 재산증가, 신용평가등급(평점) 등 신용도 상승, 기타 신용상태 개선) 은행에(금리인하를 요구)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카드고객상담센터 : 1644-4000 〉 상담사에게 금리인하 요구
-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시기, 횟수제한이 없습니다. 다만,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(은행이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)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,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